

# 롤스와 샌델, 공동선과 정의감

맹 주 만

**주제분류** 윤리학, 정치철학

**주요어** 공동선, 공공선, 정의감, 선관, 옳음의 우선성, 좋은 우선성, 권리, 평등주의적 자유주의, 정치적 자유주의, 공화주의

**요약문**

이 글은 샌델의 롤스 비판과 그의 공동체주의적 공화주의를 평가하면서 정치적 자유주의로 발전한 롤스의 평등주의적 자유주의의 근본정신을 옹호하려는 시도다. 특히 가치 다원주의 시대에서 실현가능한 좋은 삶의 문제와 관련해서 샌델의 공화주의적 입장이 지난 한계와 위험성을 경계한다. 나는 이 점을 그의 롤스 비판에 주목하며 대응할 것이다. 개인적 선과 이익에 부합하는 사회 전체의 공공 복리와 복지의 실현을 이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분히 개인주의적 전통에서 있는 근대적 의미에서의 공동선은 이미 그리스와 로마 시대에도 중요한 문제였다.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가 자신의 정치철학의 주제로 전제하고 있듯이 개인적 목적으로서의 좋은 삶을 개인과 공동체의 복리가 균형을 이루고 있는 공동선과 관련되어 규정하고 있는데 비해서, 로마 시대의 고전적 공화주의 전통은 공동선을 공의 우선의 공공선에 종속적인 가치로 이해하려는 사고가 지배적이었다. 그들에게는 공공선이 곧 공동선이었다. 오늘날의 샌델 역시 전반적으로 이러한 노선을 계승한다고 볼 수 있다. 비판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전통의 옹호를 포함하여 공동체적 가치에 열린 자세로 임하는 공동체주의자들 중에서도 샌델은 공화주의 공공 철학을 지향한다. 나는 공동선의 문제에 있어서 옳음의 우선성에 기초한 롤스의 정치적 자유주의가 좋은 유의 우선성을 앞세우는 샌델의 공동체주의적 공화주의 입장 보다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나 훨씬 더 설득력 있는 견해라는 생각 위에서 샌델의 롤스 비판을 평가할 것이다. 특히 양자 간의 대립을 해소하면서 동시에 롤스의 옳음의 우선성 원리가 더 우월한 지위를 갖는 입장이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 롤스가 강조하고 있는 인간의 두 가지 도덕적 능력인 정의감과 선관의 역할에 주목한다.

## 1. 룰스와 샌델

이 글은 샌델의 룰스 비판과 그의 공동체주의적 공화주의를 평가하면서 정치적 자유주의로 발전한 룰스의 평등주의적 자유주의의 근본정신을 옹호하려는 시도다. 특히 가치 다원주의 시대에서 실현가능한 좋은 삶의 문제와 관련해서 샌델의 공화주의적 입장이 지닌 한계와 위험성을 경계 한다. 나는 이 점을 그의 룰스에 대한 비판에 주목하며 대응할 것이다. 정치란 국가와 사회를 이루며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 그들의 삶이 빛어내는 문제와 갈등을 해결하려는 하나의 기술이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좋은 삶의 구현을 추구한다. 가장 넓은 의미에서 좋은 삶은 개인적 선(좋음), 공동체 내지는 사회 구성원 전체의 공공 복리와 복지를 추구하는 공동선(the common good)과 공공의 선(공공선; the public good) 혹은 공익적 가치를 포함하는 다양한 선들로 이루어지며,<sup>1)</sup> 따라서 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가치들과 불가분의 관계를 갖는다.

개인적 선과 이익에 부합하는 사회 전체의 공공 복리와 복지의 실현을 이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분히 개인주의적 전통에서 있는 근대적 의미에서의 공동선은 이미 그리스와 로마 시대에도 중요한 문제였다.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가 자신의 정치철학의 주제로 전제하고 있듯이 개인적 목적으로서의 좋은 삶을 개인과 공동체의 복리가 균형을 이루고 있는

---

1) 공동체의 선 또는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가치로서의 선을 뜻하는 *common good*은 그것이 정의되는 방식에 따라서 공동선(共同善)이나 공공선(公共善)의 의미를 모두 가질 수 있다. 때문에 개인들과 다양한 공동체를 비롯해서 하나의 국가에 이르기까지 개인이나 사회 구성원 전체 혹은 공공의(public) 선 중에서 어떤 것을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의미의 차이가 생길 수 있다. 가령 공리주의 모토인 “최대 다수의 최대행복”처럼 개인의 이익이 함께 고려되는 사회 전체의 공동선을 추구하지만 실제로는 사회적 공리가 곧 공동선이며 그것이 곧 공공선이라는 등식을 낳을 수 있다. 이 글에서는 그 용법에 상관없이 *common good*은 ‘공동선’, *public good*은 ‘공공선’으로 통일했다. 일반적으로 대상이나 재화의 측면에서 *common good*은 공동의 재화 혹은 공동재로서 개인 간의 경쟁이나 선택을 허용하는 가치들에 적용되지만, *public good*은 공공재로서 개인 간의 경쟁이나 선택을 허용하지 않는 가치들에 적용된다.

공동선과 관련지어 규정하고 있는데 비해서, 로마 시대의 고전적 공화주의 전통은 공동선을 공익 우선의 공공선에 종속적인 가치로 이해하려는 사고가 지배적이었다. 국가를 시민공동체로 파악한 그들에게는 공공적인 것(the res publica) 즉 공공선이 곧 공동선이었다. 오늘날의 샌델 역시 전반적으로 이러한 노선을 계승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로마 공화정 시대의 공공선에 대한 옹호는 사회 구성원 전체가 아니라 일정 수준의 지위에 있는 주류 남성 엘리트들의 지배 논리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그러나 근대는 정치적 토양이 그 이전과는 전혀 달랐다. 비록 점진적이었다 하더라도, 또한 시민권을 갖는데 여전한 제한과 제약이 뒤따르고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사회 구성원 전체의 공통 이익만이 아니라 상호 대립하는 구성원들의 다양한 이익들이 본격적으로 고려되기 시작했다. 이 같은 변혁의 근저에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 및 이익을 중시하는 신조가 놓여 있었으며, 때문에 공적인 것을 강조하는 공공선과의 충돌은 피할 수 없었다. 최근 1980년대부터 불붙기 시작한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논쟁도 그 핵심에는 개인의 자유와 공공선의 문제가 자리 잡고 있으며, 그 공방의 추이를 살펴보면 이 문제가 각 진영의 입지를 좌우하는 중요한 쟁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sup>2)</sup>

근대 아래로 지배적 담론으로서, 그리고 현대에 들어서 더욱이 구소련을 비롯한 동유럽의 사회주의 국가의 몰락에 힘입어 성공한 이론으로서의 위상을 지녔던 것이 자유주의 혹은 자유 민주주의였다. 반면에 샌델은 자신을 다수의 가치나 특정한 시대의 지배적 관습이나 관행을 중시하는 정형화된 공동체주의자에 포함시키는 것을 거부하는데, 대표적인 공동체주의자들인 찰스 테일러, 매킨타이어, 마이클 활찌 역시 공동체의 전통과 관습의 맹목적인 수용과 존중을 강변하는 극단적인 공동체주의자 혹은 민족주의적 공동체주의자가 아닌 것은 분명해 보인다. 하지만 시민의

---

2) 잘 알려져 있다시피 2005년에 한국을 방문하여 자신의 정치철학적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는 샌델의 주장에서도 이 같은 점을 잘 엿볼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Michael J. Sandel, 『공동체주의와 공공성』, 특히 pp. 36-48.

자치와 법의 지배를 특별히 더 옹호하는 샌델의 근본 입장은 분명 차별화되어야 하지만, 대체로 공동체와 공공선, 시민적 덕성과 정치적 참여, 평등과 책임 등을 강조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차이에도 불구하고 샌델을 포함해 그들 모두를 공동체주의자로 분류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다.

비판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전통의 옹호를 포함하여 공동체적 가치에 열린 자세로 임하는 공동체주의자들 중에서도 샌델은 공화주의 공공 철학(the public philosophy)을 지향한다. 특히 샌델은 그 자신의 학문적 출발에서부터 룰스의 평등주의적 자유주의 및 그것이 함축하는 자유주의 공공 철학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자신의 정치철학적 입장과 입지를 구축해왔다. 때문에 자유주의 비판도 대부분 전형적인 고전적 자유주의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평등과 분배를 중시하는 룰스의 평등주의적 자유주의 정치철학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자신을 일방적으로 지배적인 습관이나 관행을 중시하는 다수자 중심의 공동체주의자로 혹은 과도한 자유주의 비판자로 분류하는 평가를 거부하는 샌델 자신의 고유한 입장은 그의 룰스 비판을 통해서 훨씬 잘 드러난다.

샌델 자신의 말을 빌리면,<sup>3)</sup> 룰스의 사상 가운데 그가 동의하는 것은 대체로 세 가지인데, 공리주의 비판, 인간에게는 정의와 같은 기본적인 도덕적 충동이 있다는 것, 『정치적 자유주의』에서 말한 반성적 평형 개념 등이 그것이다. 반대로 동의하지 않는 점으로는 두 가지로서 선(좋음)에 대한 권리(옳음)의 우선성 주장과 자유주의적 공적 이성 개념을 들고 있다. 샌델은 스스로 이 같은 자기 평가를 하면서 정의 개념을 중시하는 룰스를 따라 정의에 입각한 재분배의 원리 및 그 바탕에 깔린 도덕적 원리에는 동의하면서도 내용적으로는 룰스가 이를 규명하기 위해 원초적 입장을 도입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비판하고 있다. 샌델의 이 같은 생각은 룰스가 기본적으로 정의를 옳음의 우선성 주장과 결부하여 접근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비판으로 읽을 수 있다. 샌델은 정치적 권리의 특정한 선 개념 없이 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따라서 정의의

---

3) 같은 글, p. 341.

문제를 다룰 때도 우리가 도덕적, 종교적 관념을 분리시키거나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이 점은 샌델이 특별히 강조하는 주장으로서 정의 및 공공선의 문제에서 권리와 옳음의 우선성이 갖는 비현실성을 비판할 때 언제나 되풀이해서 등장한다. 같은 연장선상에서 샌델은 롤스의 자유주의적 공적 이성 개념을 거부할 때도 정치적 논변은 도덕적·종교적 관념과 분리될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는 것을 누누이 강조하고 있다. 이는 후기의 롤스가 정치적 자유주의를 통해서까지 물리치려했던 입장으로서 양자가 근본적으로 대립하는 지점이다.

샌델은 개인선과 공동선 모두를 공공선에 제약된 것으로 파악하는데, 사회적 선 관념을 옳음이나 권리 그리고 정의 관념 보다 우선시하며, 후자가 전자에 의존적이거나 그래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롤스에게 “정의의 원칙은 공(공)적인(public) 것이다.”<sup>4)</sup> 롤스는 선에 대한 옳음의 우선성을 내세우며 사회 전체의 이익 추구로서의 공동선과 엄격히 구별되는 공정성으로서의 정의가 최고의 가치를 갖는다고 주장하며, 이를 평등주의적 자유주의 및 정치적 자유주의에 입각해서 정당화한다. 롤스는 별도의 공동선 혹은 여러 공동체/결사체들 중에서 어느 하나의 특정한 집단을 위한 이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공공의 복지를 추구하되 이를 모든 것에 우선하는 하나의 공동선으로 추구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수 있기에 거부될 수밖에 없는데, 롤스에게 개인의 기본권은 사회 전체의 복지와 복리 혹은 공동의 이익으로서의 공동선이라는 이름 아래서도 결코 유린될 수 없으며 또 유린되어서도 안 되는 가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권과 같은 것을 불가침적인 가치로 내세우는 롤스는 다리의 건설이나 공중 버스의 운영과 같이 개인권과 양립 할 수 있는 정당성을 지닌 공공선을 추구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개인권의 보호와 함께 그 결과로서 사회 전체의 공동선이 증진될 수 있는 공공적 정의관을 추구한다. 나는 정의의 문제에 있어서 “불가침의 인권이라는 자유주의의 전통적인 도덕적 직관과 최소 수혜자 우선성으로 대변되는

---

4) J. Rawls, *A Theory of Justice* (1971), p. 570.

강력한 평등주의를 결합하여 공정으로서의 정의라는 독특한 정의관<sup>5)</sup>을 평등주의적 자유주의에 기초하여 옹호하고 있는 롤스의 사상이 개인권에 우선하는 공공선을 중시하는 샌델의 공동체주의적 공화주의 입장 보다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나 훨씬 더 설득력 있는 견해라는 생각 위에서 샌델의 롤스 비판을 평가할 것이다. 그리고 오히려 롤스의 입장에 기초 함으로써 양자 간에 놓여 있는 혹은 화해할 수 없어 보이는 간극도 해소 될 수 있다고 주장할 것이다. 이를 위해 샌델에 의해서 의무론적 자유주의 정치철학으로 해석되는 롤스의 『정의론』 및 그의 후기 철학을 대표하는 『정치적 자유주의』 모두에서 자신의 공정성으로서의 정의관의 토대로서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있는 인간의 두 도덕적 능력인 선관(善觀; the conception of the good)과 정의감(a sense of justice)의 역할에 주목할 것이다.

## 2. 옳음의 우선성과 좋음의 우선성

샌델은 한국에서 행한 바 있는 강연을 통해서 자신의 정치철학적 입장의 대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 바 있다: “나의 모든 강연들은 선에 대한 옳음의 우선성을 주장하며, 정부로 하여금 그의 시민들이 신봉하고 있는 도덕적·종교적 신념들에 대해 중립적이기를 요구하는 유형의 자유주의에 대한 나의 반대를 반영하고 있었다. 나는 정의와 권리에 대한 논쟁을 실질적인 도덕적·종교적 관념들로부터 분리하는 것이 항상 가능하지는 않다는 것을 주장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이 가능한 경우라 하더라도 반드시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강연을 진행하면서 나는 자유주의적 중립성을 견지하는 공공 철학이 구성원들의 의무와 연대에 대해 적절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으며, 인간적·사회적 관계에서 시장이 영향을 미치는 영역을 지나치게 많이 허용하고, 자치(self-government)에 대한 의미 있는 참여를 위해 필요한 시민적 덕성을 배양하는 데 실패하고 있으

---

5) 정원섭, 「공적 이성과 정치적 정의관」, p. 235.

며, 또 도덕적·정신적 공명을 상실한 빈곤한 공적 담론으로 이끌고 간다는 점을 보여주려고 애썼다.”<sup>6)</sup> 이와 같은 대강의 진술을 통해서 샌델이 옹호하는 공동체주의적 공화주의의 일단을 엿볼 수 있다. 샌델의 공화주의는 자유지상주의는 말할 것도 없이 롤스식 자유주의적 민주주의 혹은 평등주의, 절차적 자유주의, 자유주의적 공공 철학, 선과 좋음에 대한 정의 혹은 권리의 우선성, 개인의 가치와 선에 대한 국가의 중립성 등을 비판하며, 그 대안으로서 권리와 옳음에 대한 선의 우선성에 기초한 공동선에 대한 숙고, 공동체의 성원으로서의 시민적 덕성의 강조, 정치에의 적극적 참여, 역사적·구체적 인간관 등을 옹호한다. 이와 같은 대립과 관련해 롤스와 샌델이 가장 첨예하게 접점을 형성하고 있는 근본적이면서도 핵심적인 문제가 정의와 선 관념이다. 특히 정의와 선은 자유주의와 공화주의 양자 모두에서 하나 혹은 다수의 공동체나 결사체가 추구하게 되는 공동선의 문제와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다.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 가느냐에 따라서 롤스와 샌델의 입장 차이가 가장 뚜렷하게 구분되며, 그 만큼 명암 또한 갈릴 수밖에 없다.

롤스는 기본적으로 정의와 옳음 및 권리를 공동선에 우선하는 독립적인 가치로 인식한다. 그의 정의론 자체가 그 정당성을 증명하는데 바쳐지고 있다. 롤스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 그리고 개인적 선의 추구에 대해서 국가의 중립을 요구하며, 개인권을 집단이나 공동체의 선으로부터 독립적인 가치를 갖는 것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당연히 하나의 특정한 선으로서 개인의 도덕적·종교적 신념 역시 공공선으로부터 독립해 있는 중립적인 가치들이다. 반면에 샌델은 살기 좋은 공동체의 건설은 선 및 좋음의 관념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만일 선에 대한 정의의 우선성만을 강조할 경우, 공동체의 구성원들 및 다양한 집단들 간의 갈등을 올바로 조정할 수 없으며, 그런 사회나 국가는 결코 살기 좋은 곳이 아니라고 응수한다.

샌델이 보기의 롤스식의 자유주의 정치철학이 이전에 비해 많은 점에

---

6) Michael J. Sandel, 『공동체주의와 공공성』, p. 8.

서 불평등의 해소와 가능한 대안들의 제시를 통해 이를 어느 정도 불식 시킨 공로는 인정할 수 있지만, 오늘날 개인의 자유가 적극적으로 옹호되고 자율적인 경제 활동이 허용되며, 효율적인 법체계가 작동되고 있는 자유주의 국가에서도 개인들 간에 발생하는 불평등은 여전하다는 점에서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고 지적한다. 이를 위한 보다 근본적인 개선과 해결책이 필요하며, 그렇지 않으면 전보다 더 많은 사회적 문제에 직면 할 공산이 크다고 생각한다. 이 같은 샌델의 현실 인식은 롤스의 정의와 옳음 및 권리의 우선성에 반대하며, 선 및 좋음의 우선성과 공공선의 가치를 중시하는 공동체주의적 공화주의를 대안으로 삼는다. 샌델은 근본적으로 공동선을 포함해서 정치, 도덕, 종교와 같은 가치들을 인간적 삶과 분리하거나 독립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거부한다. 샌델의 근본적인 문제의식은 “좋은 삶에 대한 특정 개념을 전제하지 않고서 옳음을 확인하거나 정당화할 수 있는가” 즉 “개인의 주장이나 공동체의 주장이 더 많은 비중을 갖느냐가 아니라, 사회 기본 구조를 규제하는 정의 원칙이 서로 대립하는 시민들이 신봉하는 도덕적·종교적 확신에 관해서 중립적일 수 있는가”하는 것이다.<sup>7)</sup> 샌델은 이에 대해서 좋음과 옳음, 그리고 정의와 시민의 도덕적·종교적 확신의 불가분리성을 옹호하면서 롤스식 자유주의에 대해서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나는 샌델이 롤스의 문제의식과 철학적 주장 및 그 함의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고 보지 않는다. 샌델은 16년 만에 내놓은 『자유주의와 정의의 한계』(1998)의 재판에서 롤스는 물론이고 공동체주의 진영과도 분명한 선을 긋고 있는데, “옳음이 좋음보다 앞선다.”는 원리와 대조를 이루는 “정의와 좋음은 서로 상관적이다.”는 원리를 내세워 다시 한 번 저들의 입장과의 차별화를 시도한다(나는 간단히 전자를 ‘옳음의 우선성 원리’, 후자를 ‘좋음의 우선성 원리’라 부르겠다). 그런데 ‘좋음의 우선성 원리’를 통해서 정의와 선 또는 옳음과 좋음을 연결하는 방식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기존의 두 가지 방식을 비판하고 세 번째 가능한 대안

---

7) Michael J. Sandel, *Liberalism and the Limits of Justice* (1998), p. x.

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좋음의 우선성 원리’의 첫 번째 경우는 “정의 원칙의 도덕적 힘은 특정한 공동체 혹은 전통에서 널리 신봉하거나 폭넓게 공유되는 가치에서 나온다.”<sup>8)</sup>고 하는 일반적으로 공동체주의의 주장으로 알려진 것이다. 샌델이 이 방식을 거부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본래적 좋음 혹은 인간의 선에 대한 선행하는 규정이 부재한 상태에서 옳음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공동체나 전통에 내재한 가치 이해에 의존해야 하는데, 전통에 대한 해석은 다양한 이견에 직면할 공산이 크며, 더욱이 어떤 해석이든 그것은 특정한 공동체를 전제로 해야만 하거나 또는 해당 공동체에 속해 있으면서도 아직은 실현되지 않은 어떤 이상에 호소해야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다른 하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 이론이 이에 속한다. 이에 따르면 권리의 용인은 본래적 선에 의존적인 좋은을 증진시키는 목적의 도덕적 중요성에 따라 결정된다. 즉, 좋은 목적으로서의 삶의 방식에 좋은이 속해 있으며, 옳음 또한 삶의 방식과 좋은에 따라서 규정된다는 것이다.<sup>9)</sup> 이 방식은 선행하는 본래적 좋은에 기초한다는 점에서 첫 번째 경우의 공동체주의와는 근본적으로 구분된다. 샌델은 이를 통해 롤스식의 자유주의, 전형적인 공동체주의,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식의 목적론적 윤리설 내지는 완전주의 윤리설 모두와 선을 그으며, 자신의 공동체주의적 공화주의의 성격을 보다 분명히 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샌델의 공동체주의는 ‘좋음의 우선성 원리’를 주장하는 다른 두 방식과 비교하면 “권리의 정당화는 채택된 목적의 도덕적 중요성에 달려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데, 이는 “권리가 촉진하는 목적의 내용”을 중시하는 것이다.<sup>10)</sup> 왜냐하면 샌델이 차별화 하려는 여타의 공동체주의나 아리스토텔레스주의 모두 ‘목적의 내용’ 자체가 갖는 도덕적 중요성을 우선적 고려의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지 않는데, 그들은 공동체나 전통이 공유하고 있는 가치나 특정한 좋은 삶의 방식을 그 자체로 고유한 가치

8) 같은 글, p. x.

9) 같은 글, p. xi.

10) 같은 글, p. xi.

를 갖는 목적의 내용 보다 선행시키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점은 매우 민감한 주제다. 이는 단순히 롤스식의 ‘옳음의 우선성’ 원리와 정면충돌하는 문제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주의 진영의 내부적 쟁점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결국 저들 모두가 각기 상이한 입장을 갖는 것도 이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갈리게 된다.

샌델은 한 개인이 갖는 특정한 권리는 결코 개인의 자율성에 대한 권리로부터 성립하는 파생적 권리들 중의 하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가령 종교의 자유처럼 우리가 종교적 자유를 갖는다는 것, 특정한 종교적 믿음을 갖는다는 것, 그에 따른 종교적 의무를 수행하는 것 등은 사람들이 지난 믿음의 내용이나 종교 자체의 도덕적 중요성으로부터 성립하는 것 이어서 그 사람의 삶과 가치관으로부터 분리시킬 수 없다. 그렇게 행위 주체는 역사와 전통을 통해 형성된 사회적 관계와 가치 체계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롤스가 주장하듯 일체의 가치로부터 중립적이거나 추상적이며 무연고적인 자아의 선택에 의해서 비로소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서로 동일한 공동체에서든 상이한 공동체에서든 종교적 믿음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저 선택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어떤 사람에게는 자신에게 꼭 필요한 목적 내지는 자신의 정체성을 좌우하는 가치를 갖는다는 점에서 여타의 관심이나 목적과 구분되는 종교적 선일 수가 있다. 같은 이유에서 샌델은 롤스식의 자유주의는 개인은 자신의 믿음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추구할 수 있는 종교적 자유가 있으며, 이를 어떤 다른 가치나 선에 우선하는 권리로 간주하는데, 이런 중요한 가치를 여타의 다른 덜 중요한 행위와 동일시하거나 그 자신으로부터 분리시킨다는 것은 당연히 부당한 것이 될 것이라고 비판한다.<sup>11)</sup> 샌델에게 인간은 태어나면서 이미 사회적 관계 속에서 형성된 특정한 가치, 특정한 선, 특정한 권리, 특정한 의무를 어떤 다른 것 보다 더 중시하게 되는 상황이나 우연적 조건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존재로 간주되기 때문에 저와 같은 비판을 견지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공평한 비판이 아니다. 상

---

11) Michael J. Sandel, 『정의의 한계』, p. 54.

호 대척점을 이루고 있는 위치에서의 비판이 아니기 때문이다. 적어도 특정한 선에 대해서 옳음의 우선성과 정의 원칙의 중립성을 주장하는 롤스의 정의관은 샌델식의 선 관념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에 대한 반성이 이루어지는 지점에서 출발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해와 평가가 우선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샌델이 이해하는 방식의 선 개념은 다양한 선 관념들의 갈등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샌델은 상호 대립하는 선 관념들 사이에 목적의 내용에 따라 그 중요성을 평가하는 방식을 중시하겠지만, 롤스의 입장에서 보면, 이는 특정한 종교적 선들의 경우처럼 더 이상의 해결이 불가능한 갈등 지점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 같은 다양한 선관 내지는 선관념의 충돌과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전략이 롤스의 옳음의 우선성 원리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갈등하는 선관들의 충돌을 해결하려는 관심과 요구 역시 하나의 선관 내지는 선 관념의 반영이라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이러한 요구 위에서 성립하는 롤스의 정의관 자체가 곧 하나의 선관이라 할 수 있다. 마치 이는 칸트의 선의지 개념을 연상케 하는데, 선의지는 옳음의 우선성을 근본 원리로 하면서도 이 원리 자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추구하는 도구적 선과는 다른 차원의 선 관념을 반영한다. 더욱이 롤스는 정의 사회를 위한 근본 토대로서 이론적으로는 정의와 선을 상호 독립적인 가치로 간주하지만 실천적으로는 결코 이 양자를 상호 무관한 별개의 문제로 보지 않는다. 오히려 정의와 선은 한 개인에게서는 물론 공동체에 속한 집단들 간에도 상호 밀접하게 작용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두 능력이다. 롤스는 시민들의 자치에 기초하여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sup>12)</sup> 가치로서의 공동선(the common good)의 추구라는 명분 아래 초래하게 되는 문제, 즉 개인의 권리와 정의가 전통적 의미의 공동선에 종속되어 개인의 자유를 강제하거나 부당하게 침해하게 되는 문제를 샌델과는 정반대의 관점에서 접근한다. 다시 말해서 샌델이 롤스를 비판하며, 그 대안으로서 제시하고 있는 해결책으로서 공

---

12) J. Rawls, *A Theory of Justice* (1971), p. 233.

동체주의적 공화주의가 당면하게 될 문제 지점이 오히려 바로 롤스의 평등주의적 자유주의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때문에 비록 샌델이 공동선의 추구에서 공동체 운영에의 공동 참여, 공공선을 위한 개인의 의무와 희생 및 연대 등의 시민적 덕목의 배양 등을 롤스의 정의관을 대신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하지만, 오히려 롤스는 이에 대한 샌델식의 시도가 실패하게 될 지점에서 자신의 정의론의 출발점을 선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샌델이 시민권과 자유에 대한 자유주의적 견해가 공화주의적 견해를 어떻게 밀어내고 현재에까지 이르게 되었는지를 묻고 있는 지점과 정확하게 일치한다.<sup>13)</sup>

### 3. 정치적 자유주의와 다원주의

롤스의 정의관은 단 하나의 정의관만이 존재한다고 가정하지도 또 주장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다수의 서로 경쟁하는 정의관이 존재한다고 상정한다. 따라서 당연히 다수의 정의 관념이 있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롤스가 왜 그렇게 생각했느냐 하는 것이다. 이 문제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롤스에 더 중요한 문제는 현실에는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기까지 하는 다양한 도덕관, 종교관, 가치관이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롤스에게 이 같은 현실에서 정의는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가장 중요한 실천적 덕목일 수밖에 없다. 어떤 점에서는 너무 당연하기까지 한 정의에 대한 롤스의 강조가 새삼 주목받게 되었던 것도 이런 문제의식 때문일 것이다.

롤스는 최초에 『정의론』(1971)에서 정의 문제를 근대 사회계약론의 전통을 원용해서 풀어가려고 하는데, 이 전통적인 사회계약론은 치명적인 약점들을 안고 있었다. 이를테면, 그 같은 계약이 역사적 사실로서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다는 비역사성, 일종의 가상적 약속으로서 단순한 추후적 정당화에 그치고 마는 계약은 아무런 현실적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는

---

13) Michael J. Sandel, 『민주주의의 불만』, p. 19.

비현실성, 그리고 설사 약속의 체결이 사실적 행위였다고 하더라도 왜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도덕적 정당성의 부재 등을 꼽을 수 있다. 또한 근본적으로 더 중요한 문제는 계약론은 계약의 결과에 대한 고려가 없음으로 해서 애초에 그와 같은 계약이 체결되어야만 하는지에 대한 도덕적 정당성을 물을 수가 없다는 데 있다.<sup>14)</sup> 롤스는 이 같은 약점을 오히려 장점으로 이용하는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시도했다. 이것이 장점으로 탈바꿈할 수 있었던 것은 샌델로부터 신랄한 비판을 받았던 계약 주체의 비역사성, 무연고성, 추상성, 중립성 등 현실과 유리된 자아관으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이 아니다. 실질적으로 그의 정의관을 이끌어가는 동력은 기본적 욕망 능력으로서의 선관과 자발적 의지로서 정의감에 있으며, 이 두 도덕적 능력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 바로 “공정성으로서의 정의”(justice as fairness)다.

롤스의 방법론은 현실적으로 갈등하는 다양한 선관 내지는 선 개념이 존재한다는 현실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즉 각자의 욕망에 따라서 다양하게 분출되는 행복에의 열망이 존재하며, 그 중에서 샌델이 강조하듯이 우리의 본성과 결부되어 언제나 우세한 가치를 갖는 특정한 선에 의해서 지배되는 자기 이해가 갈등의 주범이다. 하지만 샌델은 이러한 자기 이해에 대한 실질적인 고려가 정의가 고민해야 할 핵심 사항이라고 주장한다. 다시 말하자면, 샌델에 의해서 칸트적인 의무론적 자유주의로 해석되는 롤스 정의론의 독립적, 중립적, 무연고적 자아가 아니라 목적과 내용을 갖는 연고적, 상황 연관적, 역사적 자아의 특수성과 고유성을 전면에 내세운다. 하지만 샌델의 이 같은 입장은 롤스 정의론의 핵심 전제를 놓치고 있다. 앞서 지적했듯이 롤스의 인간관은 샌델이 롤스의 자아에 덧씌운 양상한 이미지와 달리, 그리고 선으로부터 옳음을 분리시켜 놓은 그 곳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인간의 선에 대한 욕망과 함께 고려되고 있는 주체에서 출발한다. 그러므로 오히려 보다 중요한 문제는 옳음의 우선성 원리 및 좋음의 우선성 원리와 관련해서 롤스와 샌델 양

---

14) 황경식, 『사회정의의 철학적 기초』, pp. 442-445 참조.

자 모두에게 중요한 것은 다양한 선 관념 내지는 선관들의 갈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여부다. 롤스의 경우 각자가 개인적으로 추구하는 선이란 행위자가 타인에게 불의한 행동을 하지 않는 한 문제가 되지 않는다. 말하자면 각자의 선의 추구가 부당하게 타인의 선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다. 롤스의 옳음의 우선성 원리는 바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그런 점에서 롤스의 정의관은 그 자체가 하나의 공공선의 표출이다. 따라서 단순히 좋음에 대한 옳음의 우선성에 대한 샌델의 비판은 화살의 방향을 잘못 겨누고 있다. 롤스의 자아가 아니라 그의 인간관을 문제 삼는 비판이, 그 정당성 여부를 떠나서, 훨씬 더 유효한 전략일 것이다.

롤스는 그의 칸트적 구성주의(Kantian constructivism)가 함의하듯이<sup>15)</sup> 『정의론』에서 보여준 원초적 입장이 갖는 형이상학적 및 일정한 도덕적 관점에 가해진 비판들을 수용하고 이에 답하면서 『정의론』이 갖는 칸트 주의적 성격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나중에 『정치적 자유주의』에서는 다시 ‘합당한 다원주의의 사실’(the fact of reasonable pluralism)로부터 출발해서 방법론적으로 정치적 구성주의(political constructivism)에 입각해 있는 정치적 자유주의를 내놓는다. 롤스 자신이 시인하고 있듯이 전기의 정치철학을 대표하는 『정의론』이 안고 있는 문제들의 핵심은 공리주의를 능가하는 하나의 대안적 체계로 발전시키고자 했던 “공정성으로서의 정의관”이 포괄적인 도덕적·철학적 교리에 입각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하나의 대표 장치로서 원초적 입장이라는 가정적 상황을 설정해서 공리주의를 대체할 수 있는 정의관으로 채택된 정의의 두 원칙이 이를바 특정한 단체나 한 개인이 지향하는 도덕적 견해나 선관이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여타의 정치, 경제, 사회 등의 영역에까지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포괄적 교리(comprehensive doctrine)로서의 지위를 갖는다는 것이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현대 민주사회는 “단순히” 포괄적인 종교적, 철학적, 도덕적 교리들의 다원주의를 넘어서 이것들이 서로 양립할

---

15) 맹주만, 「롤스, 칸트, 그리고 구성주의」, pp. 117-150.

수 없는 “합당한” 포괄적 교리들로 이루어지는 다원주의를 특징으로 하고 있는데, 『정의론』에서 보여준 자신의 공정성으로서의 정의 역시 그 근본 성격에 있어서 이처럼 우열을 가릴 수 없는 포괄적인 철학적 교리를 중의 하나일 수 있기 때문이다. 롤스가 이 같은 문제에 봉착하게 된 이유의 일단은 그 스스로 밝히고 있듯이 도덕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을 명확히 구분하지 못했던 데 있다.

『정의론』의 목적들에 관한 나의 설명에서는 사회계약론의 전통이 도덕철학의 일부로 간주되고 있으며, 그리고 도덕철학과 정치철학 간에 어떤 구분도 이루어져 있지 않다. 『정의론』에서는 정의 일반의 도덕적 교설이 그 범위에 있어 하나의 정치적 정의관과 엄격히 구분되고 있지 않다. 즉, 포괄적인 철학적이면서 도덕적인 교리와 정치적 영역에 한정된 관점들 사이에 아무런 대조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이 강의[『정치적 자유주의』]에서는 이를 구분하고 또 이와 관련된 개념들이 근본적인 것이다.<sup>16)</sup>

이처럼 전기에서 후기에로의 최종적인 입장 변화는 그가 원칙적으로 현대 사회를 특징짓는 다원성이 입헌 민주체제의 자유로운 틀 내에서 일어나는 인간 이성의 활용을 통한 정상적인 결과라는 점을 하나의 현실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sup>17)</sup> 이러한 현실을 하나의 사실로서 가정하고서 옹호되고 있는 것이 바로 롤스의 정치적 자유주의다. 이 같은 변화는 롤스가 겨냥하고 있는 정의론의 목적과 관련해서도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왜냐하면 이는 곧 롤스 스스로 인정하고 있듯이 『정의론』에서의 공정성으로서의 정의관에 입각한 “질서정연한 사회”(a well-ordered society)의 개념이 비현실적이며, 그런 점에서 도덕철학의 역사에서는 그다지 주목받지 못해왔지만, 반면에 정치철학에서는 가장 근본적인 주제라 할 수 있는 안정성 문제 역시 이 개념과 함께 『정의론』의 전체적인 견해와 양립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를 낳게 되기 때문이

16) J. Rawls, *Political Liberalism*, p. xvii

17) 같은 글, p. xviii.

다. 이 같은 문제들과 관련하여 『정의론』에서의 모호성을 제거하고자 롤스는 정치적 자유주의를 정당화하면서 아예 처음부터 공정성으로서의 정의를 정치적 정의관으로 제시하려고 시도하게 된다. 이로써 『정의론』이 표방한 공정성으로서의 정의는 정치적 자유주의의 한 형태로서 재차 옹호된다.

정치적 자유주의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합당하지만 양립 불가능한 종교적, 철학적, 도덕적 교리들로 심하게 나누어진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의 안정되고 정의로운 사회를 상당 기간 동안 지속시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이를 달리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심각하게 대립하지만 합당한 포괄적 교리들이 공존하면서도 이들 모두가 입헌 체제의 정치적 정의관을 인정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이러한 중첩적 합의에 대한 지지를 얻어낼 수 있는 정치적 정의관의 구조와 내용은 무엇인가? 이러한 것들이 정치적 자유주의가 답하고자 하는 질문들에 속한다.<sup>18)</sup>

그런데 롤스가 『정의론』과 『정치적 자유주의』 모두에서 일관되게 전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정의감(sense of justice)과 선관(conception of the good)이라는 두 가지 도덕적 능력이다. 이 두 능력은 한 개인이 공정한 사회적 협력의 체계에 합의할 수 있는 충분한 참여자로서의 자격을 갖춘 존재임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롤스의 정치철학을 떠받치고 있는 근간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정의감은 이러한 사회적 협력 체계에 의해서 추구하게 될 질서정연한 사회의 유지까지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한 도덕적 능력이다. 롤스에 의하면, 정의감은 사회적 갈등 상황에서의 문제를 사회적 협력의 공정한 조건을 규정하는 공적 정의관에 입각하여 이해하고 적용하며 행동하는 능력이다. 그리고 정당화의 공적 기반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정치관의 성격을 전제할 때, 정의감은 자신들이 공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 조건에 입각하여 타인과의 관계에서 행동하려는 자발적 의지(willingness)를 표현한다. 또 선관에 대한 능력은 자신의 합리적

---

18) 같은 글, p. xx.

이익이나 선관을 형성하고 수정하면서 이를 합리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능력이다.<sup>19)</sup> 따라서 『정의론』과 달리 『정치적 자유주의』에서는 칸트적 인격 개념을 뒤로 하고 정치적 인격 개념이 전면에 부각되지만, 그 바탕에서는 여전히 각 개인은 공동선의 추구로까지 확대될 수 있는 “하나의 선관을 선택할 수 있는 도덕적 능력을 지닌 자”<sup>20)</sup>로서 존재한다는 점에서 인격 개념이 옳음의 우선성의 주체라는 특징은 변하지 않는다.

샌델은 공정성으로서의 정의관에 대해서 롤스가 취하고 있는 방법론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롤스 비판에 일관된 태도를 보인다. 특별히 주목할 것은 롤스의 방법론에 근본적인 변화를 불러일으켰던 선에 대한 ‘합당한 다원주의의 사실’이라는 롤스의 현실 인식을 전면적으로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다.<sup>21)</sup> 이에 따르면, 롤스의 정치적 정의관은 인간의 자유로운 이성적 활동은 좋은 삶에 대한 이견은 산출하지만 정의에 대한 이견은 산출하지 않는다는 가정, 즉 ‘합당한 다원주의의 사실’은 “정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전제 위에서만 성립할 수 있는 주장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자유주의 정의관 안에서도 다양한 그리고 서로 상충하거나 이견을 빚어내는 다양한 정의관들이 존재한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선에 대한 다원주의”와 마찬가지로 “정의에 관한 다원주의” 역시 존재하며, 이는 도덕 및 종교에 관한 다원주의와도 별단 다를 바 없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샌들이 보기에는 선에 대한 다원주의 역시 그 자체로는 합당한 것이 아니다. 반대로 서로 대립하는 다양한 선들이 존재하며, 그 중에서 보다 합당한 선 또한 존재하며, 혹은 우리가 추구하거나 추구해야 하는 선들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런 샌들의 지적과 비판은 일방적이다. 롤스는 결코 단 하나의 정의 혹은 정의관만이 존재할 수 있다고 가정하지도 않았으며, 이미 현실에 존재하는 다수의 정의관이 존재한다는 사실로부터 출발해서 자신의 정의론을 전개했다. 그렇다면 이런 오해는

19) 같은 글, p. 19.

20) 같은 글, *Political Liberalism*, p. 30.

21) Michael J. Sandel, *Liberalism and the Limits of Justice* (1998), pp. 202-204.

어떻게 해서 생긴 것이며, 롤스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 4. 공동선과 공공선

롤스에게 선에 대한 요구와 정의에 대한 요구는 다르다. 마찬가지로 개념적으로 선의 다양성과 정의의 다양성 역시 다르다. 샌델처럼 이를 동일선상에 놓고 하는 비교는 타당하지 않다. 그렇다면 공동선의 추구와 관련해서 이에 대한 다양한 접근방식을 특징짓는 정의와 선, 정의와 공공선, 옳음과 좋음은 서로 어떻게 관계하고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롤스와 샌델은 어떤 경우든 화해할 수 없을 만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샌델은 “정치적 문제로서 정의와 권리에 대한 우리의 숙고는 그러한 숙고가 일어나는 수많은 문화와 전통에서 나타나는 선관에 대한 언급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sup>22)</sup>고 단언한다. 샌델은 언제나 그 자체로 가치를 갖는 것으로 긍정되는 선의 도덕적 중요성을 중시한다. 그 선의 가치는 그것이 정의나 권리 혹은 옳음의 기준에 비추어서 승인될 경우에만 타당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전통과 문화에 공속해 있는 가치이며, 또 그와 관련해서 중요한 목적과 내용을 갖기 때문에 승인되고 허용되어야 하며, 그 때문에 그것은 또한 도덕적으로 옳은 것이다 된다. 그리고 여기에는 다양한 정의관들의 대립이 있을 수 있는데, 이는 곧 그러한 정의관 자체가 다양한 선관에 의존적이거나 그 반영이며, 따라서 선으로부터 독립적인 옳음은 존재할 수 없다는 주장으로 귀결된다.

샌델은 선에 대한 이와 같은 이해로부터 롤스가 승인하는 ‘선’에 대한 ‘합당한 다원주의의 사실’과 마찬가지로 ‘정의’에 대한 ‘합당한 다원주의의 사실’ 또한 인정할 수밖에 없으며, 이처럼 정의에 관한 다원주의 문제는 도덕 및 종교에 관한 다원주의와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롤스의 정치적 정의관의 한계를 비판한다. 그 실례로서 샌델은 “차별 철폐 정책, 소득 분배, 형평 과세, 의료 복지, 이민, 동성애자 권리,

---

22) 같은 글, p. 186.

자유 표현 대 증오 표현, 사형” 등과 같은 논란, 그리고 또한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사생활권, 투표권, 고소권 등과 관련된 소송에서 대법원의 판결 대립과 의견 충돌” 등과 같은 문제들을 지적한다.<sup>23)</sup> 이런 대립과 갈등으로부터 샌델은 정의의 불일치를 이끌어내는데, 이는 적절한 지적이 아니다. 롤스의 입장에서 이런 불일치들은 직접적으로 상호 대립하는 다양한 정의관들이 존재한다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선에 관한 상이한 이해에 기초해 있어서 생겨나는 갈등이다. 이런 점을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면, 샌델이 안고 있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상황 자체가 곧 롤스의 출발점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는 이것을 롤스의 정의관과 내재적으로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는 선관을 살펴봄으로써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선 양자가 문제의 원인과 문제 해결 방식에 있어서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전통적 의미에서 공동선(bonum commune)은 사회 제도의 합법성을 공동체의 복지라는 목적의 적합성 여부에 두고 있는데, 이런 사회적 선 개념은 개인권의 침해를 포함해서 타인의 복지와 쉽게 조화를 이루는 동질적인 정체성을 갖지 못한 집단을 소홀히 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sup>24)</sup> 각 개인이 가질 수 있는 다양한 선관을 고려할 때, 롤스와 샌델의 정치철학은 모두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는 것인지를 보여주려는 하나의 시도로 볼 수 있는데, 롤스는 옳음의 우선성 원리, 그리고 샌델은 좋음의 우선성 원리에 기초하고 있다. 롤스와 샌델의 입장이 결정적으로 갈리는 지점이 바로 여기다. 그들 각자가 바라보는 선 개념 그리고 특히 그것의 정의 개념과 맺게 되는 근본적인 방식에 대한 이해 차이가 그들의 철학의 거의 대부분을 특징짓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샌델은 롤스의 방식은 바람직하지도 않으며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부당하게 차별받는 이질적인 소수 집단의 경우, 이

23) 같은 글, p. 204.

24) O. Höffe, *Political Justice. Foundations for a Critical Philosophy of Law and the State*, p. 39.

에 대한 문제 해결은 단순히 정의 혹은 정의감 때문에 하는 행위로 해결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으며, 심지어는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샌델은 친절이나 호의를 배척하고 결사체나 인간적 유대가 갖는 도덕적 특성을 전반적으로 쇠퇴시키게 될 “잘못된 정의감”(a misplaced sense of justice)에서 하는 행위의 경우를 들고 있다.<sup>25)</sup> 여기서 ‘잘못된 정의감’이란 정의 보다 자비나 우애와 같은 덕목이 더 적절한 행동이 되며, 오히려 정의감에 의한 행동이 부적절한 것이 되는 경우라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어떤 특정한 문화와 전통을 갖고 있으며, 따라서 자신들의 특정한 종교적·도덕적 신념에 따라서 그리고 이런 신념에 뿐 리를 두고 있는 선관으로부터 행위하는 사람들에게 정치적 정의관에 따라서 중립적이기를 요구하는 것으로는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샌델에 따르면, 롤스의 방식은 그들에게서 그들 각자에게 고유한 가치를 갖는 선을 그들의 삶으로부터 유리시켜 임의적인 것으로 만들어버리기에 그들로부터 어떤 동의도 얻을 수 없을 것이며, 오히려 부당하게 그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되고 말 것이다.

샌델이 이와 같이 접근하는 근본 이유는 바로 좋은의 우선성 원리에 입각해 있는 그의 고유한 선관에 있다. 하지만 롤스의 입장에서는 샌델에게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한다. 문화 대 문화, 전통 대 전통의 대립, 혹은 동일한 문화와 전통 속에서도 각기 상이한 선관의 대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샌델은 이에 대해서 정당화될 수 있는 전통만이 가치 있다고 답하겠지만, 특정한 시기의 특정한 공간에서 그에 적합한 특정한 수준에서 통용되는 가치 기준은 사회 구성원 전체 혹은 대다수 혹은 다수가 인정하는 법이나 권위 내지는 공공선이 될 것이다. 그런데 만일 그것이 악덕이 아니라 미덕으로 승인되고, 따라서 정당화된 것이라면, 그런 과정은 아마 역사적 추이와 함께 연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만일 그것이 실질적으로 가능하려면, 그것은 또한 특정한 선관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그 사람 혹은 그

---

25) Michael J. Sandel, *Liberalism and the Limits of Justice* (1982), pp. 34-35.

사람들은 누구인가? 샌델에 의하면, 그 사람은 공동체를 결코 벗어나서 사고하거나 행동할 수 없기에 역사의 부침과 함께 해온 인격체로서의 연고적 자아, 역사적 지반을 갖기에 임의성에 노출되지 않는 유덕한 품성의 소유자, 자신의 역사를 반성할 수 있는 자기 인식의 소유자, 타인에 대한 확장된 애정을 지닌 우애의 소유자일 것이다.<sup>26)</sup> 하지만 다시 묻지 않을 수 없다. 그 사람은 어디에 있는가? 어쩌면 그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특정한 선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사람일지도 모른다. 부당한 차별을 받거나 동질적인 정체성을 갖지 못한 사람에게 따뜻한 온정을 베푼다는 미명 아래 특정한 삶을 강요하며 군림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 심지어 어떤 선에 대해서 지배력을 갖는 선은 폭력적일 수도 있다. 만일 그렇다면, 차라리 배부른 강제 보다 배고픈 자유가 나을 수 있다.

## 5. 선과 정의감

개인과 사회, 사적인 것과 공공적인 것의 관계에서 자유주의적 중립과 경계를 중시하는 롤스와 반대로 좋음(선)의 우선성 원리에서 출발하는 샌델의 공동선은 공공선으로 환원되며, 동시에 개인권과 공공선, 개인의 선과 전체의 선의 경계를 설정할 수 없다. 그런데 공공선의 관점에서 보면, 이들 선은 다양한 공동체들이나 결사체들 속에 내재하는 형성적 선들이며, 그 각각이 고유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그리고 이와는 독립적으로 선 행하는 옳음의 기준이 없다는 점에서 배제할 수 없는 우연성 위에 서 있다. 그럼에도 샌델은 이 우연성은 단순한 우연성이 아니라 역사적 우연성이라는 점에 근거해서 인간적 삶의 본질을 형성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롤스의 철학적 토대가 갖는 임의성을 지적한다. 샌델은 롤스의 자유주의적 정의는 인간의 선에 대한 적절한 이해로부터 유리된 무연고적 자아, 실제의 현실에서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정의의 여건과 정의감의 불일치, 선과 분리된 옳음 등에 기초해 있으며, 따라서 그것이 구체적 삶을

---

26) 같은 글, pp. 179-183.

통해서 형성된 선과 유리되면 될수록 임의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은 결코 좋은 삶의 실현을 위한 길잡이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하나의 공공선을 표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롤스의 공공적 정의관은 공동선과 염밀히 구분되는데, 역사적으로 공동선의 추구는 사회 전체의 공공 복리와 복지를 증진시키려 하면서도 개인의 선을 최소화 하는 경향이 있거나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많았다. 이에 개인의 선과 권리의 옹호하는 평등주의적 자유주의자로서 롤스가 취한 방법은 옳음과 선에 대한 칸트적 개념을 적용하는 것이었지만, 그것은 이미 정의감과 선관으로 특정되는 인간관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었다. 롤스의 입장에서 본다면, 오히려 샌델이 내세우는, 이를테면 근본적으로 역사적 우연성의 산물로 간주할 수 있는 목적적 가치와 선은 개인과 특정 공동체 모두에 있어서 임의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임의성을 초래하는 근본 원인이 좋음의 우선성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이는 거부되어야 한다.

롤스가 정의감을 앞세우며 정의의 관점에서 다른 감정들에 대해 우월한 지위를 부여하는 것과 달리 샌델은 정의감을 자비, 사랑, 우애 등과 같은 덕목들과 나란히 놓는다. 이런 차이는 롤스가 정의감에 다른 감정을 교정하거나 부정의를 시정하는 역할과 지위를 부여하는 반면에, 샌델은 정의감의 발휘가 안고 있는 역사적 제약과 상황적 한계에 주목한다. 하지만 샌델처럼 자비, 사랑, 우애와 같은 덕목을 정의감과 나란히 놓는 것은 각 개인들, 다양한 결사체들의 존재를 고려할 때 오히려 과도한/과소한 자비, 과도한/과소한 사랑이나 우애의 경우처럼 이에 비례해서 임의성의 크기도 커진다. 이와 같은 문제를 불식시키려면 개인선과 공공선을 구분해서 독립적인 가치로 인정해야 한다. 그와 함께 개인권의 보호와 신장이 이루어지면서 사회 전체의 공동선을 증진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도록 하려면, 공공적 정의관 아래서 이 두 선이 구분되면서도 동시에 상호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바로 그러한 지위를 갖는 것이 롤스의 공공적 정의관에서 정의감이 하는 역할이다. 곧 살펴보겠지만, 롤스의 정의론에서

정의감과 선은 이중적으로 상호 관계하고 있다.<sup>27)</sup> 우리는 이 점에 주목하면서 샌델의 롤스 비판 내지는 이해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게 된다.

반면에 샌델에게는 이런 연결 고리가 있을 수 없으며, 따라서 정의감, 자비, 사랑, 우애 등이 각기 그에 적합한 역할을 맡게 된다. 그러면 정의감과 우애나 사랑이 함께 문제가 될 때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가? 가령 소수자 우대와 같은 차별 철폐(affirmative action) 정책의 경우에 그 소수자가 우대를 받아야 하는 이유와 방식은 개별 경우마다 달라야 할 것이다.<sup>28)</sup>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우대’ 자체가 아니다. 이 우대에는 샌델과 롤스 모두 동의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샌델에 의하면, 한 개인 혹은 그가 속해 있는 집단의 경우 그 존재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데는 부모, 가족, 도시, 종족, 계급, 국가, 문화, 역사적 사건, 신, 자연, 우연 등이 (혹은 그 일부가) 작용하게 된다.<sup>29)</sup> 이렇게 확장된 자기이해에 근거해서 우대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도, 샌델과 롤스 모두 동의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 오히려 실질적인 문제는 소수자 우대의 정당성 혹은 필요성 요구인 바, 내가 보기엔 롤스는 정의감을 그 이유로 제시할 것이다. 반면에 샌델은? 샌델 역시 우선적으로 정의감을 꼽을 수 있겠지만 사랑이나 자비가 아닌 반드시 정의감이어야 하는 이유를 제시하기 어려울 것이다. 샌델은 오히려 반대편에 서서 앞서 제시한 잘못된 정의감을 문제 삼을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대로 인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거나 상대에 대한 우대를 자신에게는 부당한 차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합리적으로 설득할 방도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샌델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하나의 공공선으로서 보다 합리적이면서도 우월한 지배력을 갖는 사회적 선관이 될 것인데, 그 자체의 정당성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27) J. Rawls, *A Theory of Justice* (1971), 86절 ‘정의감의 선’(The good of the sense of justice), pp. 567-577.

28) Michael J. Sandel, *Liberalism and the Limits of Justice* (1982), pp. 135-147.

29) 같은 글, p. 143.

샌델이 지적하는 ‘잘못된 정의감’ 문제는 롤스가 그의 정의론에서 정의 원칙을 도출하기 위해서 상정한 ‘정의의 여건’(circumstances of justice)과 관계있다. 롤스에게 정의란 인간의 자비심이 충만하고 자연이 풍요로워지면 불필요한 문제다. 반대로 정의가 요구된다는 것은 인간의 삶이 놓인 상황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바로 이렇게 정의가 요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롤스가 상정하고 있는 정의의 여건이다. 롤스의 정의 원칙은 몇 가지 기본 조건 내지는 전제들을 갖고 있는데, 공동선에 대한 개인권의 우선성, 원초적 입장에서 선택하게 될 정의 원칙의 기준점이 되는 선, 즉 침해될 수 없는 개인권의 근본 내용으로서의 기본적 선, 그리고 정의 원칙이 채택된 이후의 구체적 현실에서 작용하게 될 개인들의 선관의 제한 등이다. 그런데 이 모든 것에 두루 미치는 대표적인 전반적 조건으로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회의 충분한 협력적 성원”일 수 있는 “인간의 두 가지 도덕적 능력”인 “선관의 능력과 정의감의 능력”이다.<sup>30)</sup> 앞 절에서 이미 살펴본 바 있는 정의감은 선관과 함께 정의 원칙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개념이다. 자비나 사랑으로 충분하다면 정의가 필요 없을 것이라는 롤스의 생각은 정의감 이외의 다른 덕목은 필요치 않다는 주장과 전혀 상관없다. 다만 어떤 행위가 더 이상 공공선과 무관할 수 없을 때 다른 덕목과 감정은 올바른 도덕적 수단이 될 수 없다고 볼 뿐이다. 이렇게 정의의 배경적 조건을 이루는 것으로서 선과 정의 문제와 이중으로 결부되어 있는 개념이 롤스가 상정한 정의의 여건이다.

롤스는 정의의 여건에 대한 설명에서 대체로 흡의 설명을 따르고 있는데, 롤스가 상정한 정의의 여건에는 주관적 여건과 객관적 여건이 있다. 전자에는 계약 당사자인 협동 주체로서의 합리적 행위자들이 서로 다양하고 이질적인 이해관심과 목적, 즉 자기 나름의 인생 계획이나 선관을 갖고 있는 조건인데, 롤스는 이를 한마디로 상호 무관심성(mutual disinterest)이라 부른다. 그리고 후자의 경우에는 적정 자원의 희소성이

---

30) J. Rawls, *Political Liberalism*, p. 19.

다.<sup>31)</sup> 이 정의의 여건과 관련하여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인간이 갖는 선관의 능력이다. 이것은 모든 인간이 보편적으로 갖고 있다고 상정되는 가장 기본적인 욕망을 특징짓는다. 롤스에 의하면, “선관의 능력은 자신의 합리적 이익에 대한 생각이나 선관을 형성하고 수정하며 합리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능력이다.”<sup>32)</sup> 이러한 선관은 단순히 특정한 대상에 한정해서 각 개인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치 있는 것에 대한 관점도 포함하며, 따라서 우리 각자는 각 개인이 추구하는 목적들과 타자와의 관계, 다양한 단체와 협회들과의 관계로 나타나기도 하는 일정한 수의 궁극적인 목적들을 선관의 일부로 구성하게 된다. 이런 관점을 통해서 우리는 도덕적·종교적·철학적 세계와 관계하여 이에 우리의 생각을 결부시키게 된다. 이런 이유에서 선의 우선성 원리만 고집하는 샌델과 달리 선과 정의감의 상호 관계와 작용 연관 위에서 있는 롤스의 옳음의 우선성 원리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선에 관한 최소 이론과 최대 이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롤스의 공정성으로서의 정의관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선에 대한 기초론으로서 사회적 기본선을 형성하는 최소 선 이론에서의 선은 각 개인의 특수한 이해관심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최대 선과 구분된다. 최소 선은 합리적 인간이라면 누구나 원하게 되는 가치로서 이러한 기본선에 기초해서 정의의 두 원칙이 정당화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조건이다. 롤스가 들고 있는 광범위한 수준의 기본선으로는 권리, 자유, 기회, 권한, 소득, 부, 자존감과 같은 것이 해당된다.<sup>33)</sup> 이런 기본선은 목적이나 관심, 애착과 같은 것과 결부되어 있으며, 따라서 샌델이 롤스에 가하는 비판 중에 가장 비중이 큰 것 중의 하나인 무연고적 자아, 일체의 가치로부터 독립해 있는 중립적 자아 등의 비판은 논점을 벗어난 것이다.<sup>34)</sup> 반면에 최대 선 이론

31) J. Rawls, *A Theory of Justice* (1971), pp. 126-130.

32) J. Rawls, *Political Liberalism*, p. 19.

33) J. Rawls, *A Theory of Justice* (1971), p. 92.; Michael J. Sandel, *Liberalism and the Limits of Justice* (1982), p. 25.

은 정의 원칙이 채택된 이후에 각 개인이 실질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구체적 가치들이나 목적들 및 이와 관련된 것들의 목록들과 관련 있다. 원초적 입장의 제약으로서의 기본선은 다양한 선관들의 갈등 해결이 왜 정의와 옳음의 우선성에 기초해야 하는지를 증명한다. 따라서 현실에서 상호 갈등하는 선관은 원초적 입장에서는 각 개인의 일반적이면서도 기초적인 이해관심으로서의 선에 제약되며, 동시에 그것이 특별히 자기 자신에게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선들이다.<sup>35)</sup> 그런데 만일 그것이 부당하게 적용되었을 때 이를 시정하고자 하는 욕망이 바로 정의감의 존재이다. 이 정의감이 어느 정도로 작용하는지는 사전에 미리 규정할 수는 없다. 원초적 입장 아래서는 정의감 역시 정의 원칙을 채택하고자 할 때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잠재적 능력으로만 존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의 원칙이 채택된 직후 정의감은 사후 효력으로서만이 아니라 정의 원칙과 관계하는 기본선의 정당성에도 개입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정의 원칙의 채택에 사전에 관여하는 효력도 갖는다. 이렇게 한 개인의 선관에 대한 능력과 정의감에 대한 능력에 따르면, 롤스에게 정의의 관점 자체가 하나의 선관의 반영으로 보아야 한다.

샌델도 인정하고 있듯이 롤스의 기본선 이론은 모든 특정 선관에 유용할 가능성이 크다.<sup>36)</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샌델이 롤스의 정의감에 대해서 갖고 있는 반감은 정의감 역시 자비나 사랑의 덕목처럼 한계가 있기 때문인데, 그것이 바로 앞서 지적한 잘못된 정의감의 가능성이다. 샌델에 의하면, 정의감은 사회적 선이 문제되는 모든 곳에서 항상 발휘될 수 있거나 또 발휘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한 마디로 정의가 필요할 때, 용기가 필요할 때, 안식이 필요할 때, 사랑과 자비가 필요할 때 등등이 각기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 못할 경우 정의 또한 미덕이 아니라 악덕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sup>37)</sup> 하지만 롤스의 ‘질서정연한 사회’의 개념이

34) 정원규, 「롤즈 정의론의 형이상학적 문제들」, p. 192.

35) 롤스는 이를 “한 사람에게 합리적이라면 모든 사람에게 합리적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J. Rawls, *A Theory of Justice* (1999), p. 497.

36) Michael J. Sandel, *Liberalism and the Limits of Justice* (1982), p. 25.

합의하듯이 정의감의 빌휘는 사회의 여건과 수준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롤스는 정의감을 최대 선 만이 아니라 최소 선의 능력과 결부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샌들의 이해를 뛰어 넘는다.

롤스에게 “정의감은 정의 원칙을 적용하고 이에 따라서 행위하며, 그러므로 정의의 관점에서 행동하려는 효과적인 욕구이다.”<sup>38)</sup> 또 그것은 “적어도 정의 원칙이 한정하는 범위에 한해서 도덕적 관점을 채택하고 이에 따라서 행동하고자 확립된 성향이다.”<sup>39)</sup> 또한 “정의감은 사회적 협력의 공정한 조건들을 규정하는 공공적 정의관(the public conception of justice)에 입각해서 이해하고, 적용하며 행동하는 능력이다.”<sup>40)</sup> 이렇게 정의감은 “타인들과의 관계에서 그들 역시 공공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 조건에 입각해서 행동하려는 자발적 의지(willingness)를 표현하는 것”<sup>41)</sup>이라는 점에서 통상적 의미에서의 욕망이기보다는 도덕적 의지에 가깝다. 롤스에 의하면, 정의로운 제도들이 굳건히 확립되어 정의롭다고 인정되는 사회, 즉 “그 성원의 선을 증진하기 위해 세워지고 공공적인 정의관에 의해 규제되는 사회”<sup>42)</sup>인 질서정연한 사회에서는 사회 성원들의 정의감 역시 이에 비례하게 발달하게 된다. 롤스의 정치철학에서 정의감이 특히 중요한 이유는 한 사회가 정의롭다면, 그러한 사회는 정의감과 같은 동기들에 따라 행위 하려는 욕구가 생겨나야 하며, 만일 그렇지 않을 경우, 그 같은 사회는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볼 수 없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 롤스의 정의관이 공리주의와 같은 다른 대안들에 비해서 안정성을 더 잘 확보해 주는 것임을 보이는데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정의로운 체제가 지녀야 할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정의감을 갖거나 혹은 그들의 잘못으로 인해 손해를 보게 될 사람들에 대해 관심

37) 같은 글, pp. 33-35.

38) J. Rawls, *A Theory of Justice* (1999), p. 497.

39) 같은 글, p. 430.

40) J. Rawls, *Political Liberalism*, p. 19.

41) 같은 글, p. 19.

42) J. Rawls, *A Theory of Justice* (1999), p. 397.

을 가져야 하며, 이러한 감정들이 충분히 강해서 규칙들을 위반하려는 유혹을 얹누를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제정되는 법이란 결국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정당성을 갖게 되고, 이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는 그 법에 따를 의무가 부여된다. 따라서 소수자들에게 손해가 되는 부정의한 법이 제정될 경우, 이 같은 부정의 역시 수정할 수 있는 사회 이어야 안정성을 갖는 질서정연한 사회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질서정연한 사회의 안정성은 비록 다수의 동의에 기초한 정당한 절차를 통해 제정된 법일지라도, 만일 그것이 소수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하는 부정의한 것일 경우,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사회 성원들의 공공적인 정의감이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느냐에 좌우된다.

그러나 질서정연한 사회는 말할 것도 없으며, 그렇지 못한 사회에서의 정의감은 어떻게 그리고 어느 정도 발휘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는데, 샌델이 말하는 잘못된 정의감에 대한 지적은 이런 문제와도 관계있다. 이런 점에서 룰스의 공정성으로서의 정의는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정의감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전적으로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즉, 원초적 입장 하에서 정의 원칙을 채택하게 되는 시점에서 정의감은 직접적으로 발휘될 필요가 없지만, 정의 원칙의 채택 이후에는 이에 따라서 수립될 사회 및 그 제도들에 속해 있는 성원들에게서 “정당성이나 정의의 관점에서(from a conception of right and justice) 행동하려는 욕구,”<sup>43)</sup> 즉 그에 따른 정의감이 실질적으로 작동하게 된다. 그런데 정의감의 역할에 대한 룰스의 이 같은 시각과 견해를 가장 잘 엿볼 수 있는 주제들 중의 하나가 그의 시민불복종 이론이다.<sup>44)</sup> 룰스는 자신의 정의론에서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이루어지는 시민불복종을 “일반적으로 법이나 정부의 정책에 변화를 가져올 목적으로 행해지는, 공공적이고 비폭력적이며 양심적이긴 하지만 법에 반하는 정치적 행위”로 정의한다.<sup>45)</sup> 단순하게 정의하

43) 같은 글, p. 416.

44) 룰스의 시민불복종 이론과 정의감의 관계 및 공정성으로서의 정의관에서 정의감의 한계에 대해서는 맹주만, 「합법적 권리와 시민불복종」 참조.

45) J. Rawls, *A Theory of Justice* (1999), p. 320. 또 다른 곳에서 룰스는 H. A.

면, 이는 “다수자의 정의감에 호소하는 청원의 한 형식”<sup>46)</sup> 내지는 “공동체의 정의감에 호소하는 정치적 행위”<sup>47)</sup> 또는 “설득의 한 형식”<sup>48)</sup>이다. 이런 절차를 통해서 시민불복종 행위는 다수자의 정의감에 호소함으로써 다수자들이 참여자들의 입장에서 다시 생각해보도록 만들어 부정의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이렇게 정의감은 정의 원칙의 채택 이전의 선과 이후의 선 모두와 관계하면서 공공적 정의관이 개인의 선 및 공공의 선과 합당한 방식으로 공존할 수 있는 중심 역할을 한다.

롤스에게 정의감이 그의 공공적 정의관에서 자비나 사랑, 우애, 용기와 같은 덕목 보다 우위를 갖는 것은 그것이 단순히 다른 욕망들 중의 하나가 아니라 “다른 목표들을 지배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며, “그 자체 안에 자신의 우선성을 포함하는 욕망”이기 때문이다.<sup>49)</sup> 따라서 이는 질서 정연한 사회의 합당한 시민들의 정의감을 단순히 이상론에 일치시키려고 만 한다거나,<sup>50)</sup> 사회비판과 사회변혁의 범위를 제한하는 약점을 안고 있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sup>51)</sup> 부정의한 상태에서도 현실과 투쟁하고자 하는 인간 욕망의 일부분이다. 따라서 이렇게 공공선의 추구에서 정의감의 역할은 그것의 정당한 발휘 내지는 그 가능성에 대한 제한과 약점이 지적된다 하더라도, 정의감을 사랑과 자비와 같은 덕목과 나란히 놓을 수는 없다. 저를 덕목은 목적적 가치를 갖는 개인적 선에 의존적인 것이기에 적어도 공공선의 영역에서는 정의감의 지배 아래 두지 않으면 안 됨

---

Bedau의 정의를 따라 시민불복종을 “일반적으로 정부의 정책이나 법률에 변화를 가져오려는 의도를 가지고 법에 반대해서 행해지는 공공적이고 비폭력적이며 양심적인 행위”로 정의한다. "The Justification of Civil Disobedience" (1969), p. 181.

46) J. Rawls, *A Theory of Justice* (1999), p. 324.

47) 같은 글, p. 326.

48) V. Haksar, “Rawls and Gandhi on Civil Disobedience”, p. 371 이하.

49) J. Rawls, *A Theory of Justice* (1971), p. 574.

50) 이양수, 「중첩합의, 정의의 우위? 선의 우위?」, p. 231 각주 35).

51) A. Sabl, “Looking forward to Justice. Rawlsian civil disobedience and its non-Rawlsian lessons”, pp. 414-415 참조.

다. 그렇다고 해서 여타 덕목들에 대해서 그것들이 불필요하다거나 배제 시켜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영역이 아닌 곳에서 자연적 의무를 비롯해 다른 덕목들은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정확히 말해서 비록 정의감의 발휘가 제한될 수 있는 상황이 언제나 가능하다 하더라도, 우리의 선관에 대한 능력은 타인이 처해 있는 부정의한 상황에 대한 우리의 정의감 또한 일깨울 것이기 때문이다.

## 6. 마무리 - 정의와 종교적 신념

정의감과 선관이라는 두 도덕적 능력이 함의하듯이 인간의 실천적 삶에서 옳음과 좋음은 샌델의 주장처럼 너무나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바로 그 때문에 우리 인간은 너무나 많은 도덕적·종교적·정치적 문제들에게 직면하게 된다. 옳음과 사회적 선의 불가분리성을 강조하며, 결국 정치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덕성과 인격적 성품에 의존하고, 공동선을 공공선으로 환원시키게 되는 샌델의 공화주의적 공공 철학은 정치적 자유주의 및 좋음에 대한 옳음의 우선성에 기초한 롤스의 공공 철학의 근본 정신을 과도하게 이분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정의감과 선관의 능력이 롤스의 정치적 정의관에서 갖는 의의와 위상을 고려할 때, 선과 옳음은 상호 공속하면서도 독립성을 갖는다. 만약 샌델식의 관점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공동선들이 모두 공공적 문제이면서도 그 해결 역시 또 다른 선관이나 공공선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면, 그것은 보다 약한 선의 제거를 위해 더욱 강력한 선에 의존해야 한다. 그러나 이 같은 상황에 숨겨져 있는 치명적인 결함은, 샌델이 강조하듯이, 언제나 선의 표준을 특정한 사람에게서 찾아야 할 공산이 크며, 더욱이 충분히 합당한 선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한, 우리는 정확히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기가 쉽지 않다는데 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한 우리의 판단은 문제 해결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문제의 시작일 것이며, 언제나

그것을 되풀이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샌델은 좋음(선)의 우선성 원리에 근거해서 도덕적·종교적 신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거부한다. 누군가가 특정한 종교적 신념을 갖고 있다면, 그가 선택하게 될 도덕적 판단은 이 신념으로부터 분리할 수 없으며, 따라서 우리가 결정해야 할 것은 그 행동을 선택하게 될 그의 신념이 지닌 합리성의 정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같은 종교적 합리성에 대한 샌델의 이해는 너무 낙관적이며 심지어는 낭만적이기까지 하다. 가령, 샌델이 자유주의적 정의관을 비판하기 위해서 여러 곳에서 빈번하게 들고 있는 사례로서 낙태의 도덕성 문제가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샌델은 이 문제에 대한 정치적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이와 관계된 도덕적·종교적 신념과 가치를 중립적인 것으로서 배제하는 접근법을 강력하게 거부한다. 우리의 모든 가치 판단은 이미 특정한 신념을 반영하며, 이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없기 때문에, 낙태 선택의 도덕성 또한 그것을 선택하는 사람의 신념과 분리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샌델은 특정한 종교적 교리에 의거해서 낙태 여부를 결정하려는 행위의 정당성은 낙태 문제와 관련된 해당 교리의 참 여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생명이나 수태, 태아의 존재론적 및 도덕적 지위가 먼저 결정되어야 하는데, 이와의 유관성에 따라 해당 교리의 합리성과 그에 따른 행위의 선택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설사 낙태의 허용여부가 그렇게 결정되더라도, 그것이 특정한 종교적 신념을 가진 사람의 그것과 다를 경우, 아무리 그것이 과학적 합리성을 입증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그 사람이 그러한 신념에 반하는 선택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가 의문이다. 생명에 관한 의료 지식과 종교적 신념의 관련성에 의존해서 선택의 합리성을 판단할 수 있다는 샌델의 믿음은 너무 낙관적으로 보인다.

롤스는 특정한 도덕적·종교적 신념이 정치적 문제 해결에서 어떤 역할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도덕적·종교적 신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조하는 롤스의 정치적 정의관 혹은 정치적 자유주의도 정의감과 선관에 대한 도덕적 능력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정한 신념

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적어도 그것이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인 것으로 발견되거나 찾을 수 있는 것이어서 우리 모두가 동의 가능한 것이라면, 정의감과 선관에 대한 도덕적 능력을 소유한 우리가 정의를 위해 이를 특정한 선이나 목적으로부터 구분하는 것은 언제나 가능한 일이며, 또한 그렇게 하지 않은 것 보다 더 나을 수 있다. 인간의 역사는 특정한 역사적 공간에서 형성된 선과 그에 준하는 덕성을 지닌 사람들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말해준 적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이 같은 우려를 지배적 집단에게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중앙대학교)

## 참고문헌

- 맹주만, 「합법적 권리와 시민불복종」, 『철학탐구』 제18집, 중앙철학연구소, 2005.
- , 「롤즈, 칸트, 그리고 구성주의」, 『칸트연구』 제20집, 한국칸트학회, 2007.
- 이양수, 「중첩합의, 정의의 우위? 선의 우위?」, 『롤즈의 정의론과 그 이후』, 황경식·박정순 외, 철학과 현실사, 2009.
- 정원규, 「롤즈 정의론의 형이상학적 문제들」, 『롤즈의 정의론과 그 이후』, 황경식·박정순 외, 철학과 현실사, 2009.
- 정원섭, 「공적 이성과 정치적 정의관」, 『롤즈의 정의론과 그 이후』, 황경식·박정순 외, 철학과 현실사, 2009.
- 홍성우, 「롤즈의 정치적 자유주의에 대한 샌들의 비판」, 『범한철학』 제33집, 2004.
- 황경식, 『사회정의의 철학적 기초』, 문학과지성사, 1985.
- Haksar, V., "Rawls and Gandhi on Civil Disobedience", in *John Rawls. Critical Assessments of Leading Political Philosophers*, ed. C. Kukathas, Volume II,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003.  
Source: *Inquiry* 19 (1976): 151-192.
- Höffe, O., *Political Justice. Foundations for a Critical Philosophy of Law and the State*, trans. by Jeffrey C. Cohen, Cambridge: Polity Press 1995.
- Rawls, J., 『사회정의론』, 황경식 옮김, 서광사, 1991.
- , 『정의론』, 황경식 옮김, 이학사, 2003.
- , 『정치적 자유주의』, 장동진 옮김, 동명사, 1998.
- , *A Theory of Justice* (1971),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71.
- , *A Theory of Justice* (1999), Revised Edition,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99.

- \_\_\_\_\_, *Political Liberalism*,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6 (19931).
- \_\_\_\_\_, "Legal Obligation and the Duty of Fair Play" (1964), *Collected Papers*, edited by Samuel Freeman,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99.
- \_\_\_\_\_, "The Justification of Civil Disobedience" (1969), *Collected Papers*, edited by Samuel Freeman,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99.
- Sabl, A., "Looking forward to Justice. Rawlsian civil disobedience and its non-Rawlsian lessons", in *John Rawls. Critical Assessments of Leading Political Philosophers*, ed. C. Kukathas, Volume II,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003. Source: *Journal of Political Philosophy* 9 (3) (2001): 307-330.
- Sandel, Michael J., 『공동체주의와 공공성』, 김선욱 외 옮김, 철학과 현실사, 2008.
- \_\_\_\_\_, 『정의의 한계』, 이양수 옮김, 멜론, 2012.
- \_\_\_\_\_, 『민주주의의 불만』, 안규남, 동녘, 2012.
- \_\_\_\_\_, *Liberalism and the Limits of Justice* (1998), 2nd. revised edi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8.
- \_\_\_\_\_, *Liberalism and the Limits of Justice* (1982),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2.

## Rawls and Sandel, the Common Good and the Sense of Justice

Maeng, Jooman (Chung-Ang Univ.)

This paper aims to focus on Sandel's critic of Rawls's deontological liberalism and liberalistic public philosophy, including his political liberalism. Rawls adheres to the justice as fairness based 'the priority of the right over the good' according to Kantian moral constructivism and the political liberalism tailored to the fact of the reasonable pluralism regarded as characteristic of modern democratic society, by distinguishing the private/personal good and the common good, the public good and the common good, political and nonpolitical values, and the private and public reason.

But Sandel maintains that our deliberations about justice as rights cannot proceed without reference to the conceptions of the good that find expression in the many cultures and traditions within which those deliberations take place. As a result, he adheres the priority of the good over the right, and reduces the common good to the public good focused on the sharing in self-government, civic virtues, dependence of liberty on self government, and political participation. Sandel says that Rawls' thinking cannot be maintained because his deontological liberalism and political liberalism separate our identity as citizens from our identity as persons, although our reflections about justice cannot reasonably be detached from our reflections about the nature of the good life and the highest human ends.

In this paper I claim that in the problems of justice, Rawls's deontological liberalism and political conception of justice are superior

to Sandel's communitarian republicanism and I call my attention to a capacity for a sense of justice and a capacity for a conception of the good to which Rawls attaches great importance.

Key words: Rawls, Sandel, common good, public good, sense of justice, conception of the good, priority of right, priority of good, equalitarian liberalism, political liberalism, republicanism

맹주만 e-mail: mangjm@cau.ac.kr

투 고 일	2012년 10월 20일
심 사 일	2012년 11월 09일
게재확정	2012년 11월 19일